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68
----------	-------

발의연월일 : 2023. 9. 6.

발 의 자 : 김미애 · 백종현 · 노용호
윤상현 · 김형동 · 이 용
최춘식 · 박대수 · 이인선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